장수군
JANGSU COUNTY

군 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484호 2022. 4. 15(금)

훈 령

장수군 훈령 제596호 장수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2-425호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장수군 공고 제2022-445호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

고 시

장수군 고시 제2022-5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8

공 고

장수군 공고 제2022-414호 도 로 지 정 공 고 ····· 29
장수군 공고 제2022-424호 수척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 ····· 30

회람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훈령 제596호

장수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4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로,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1조제1항 각호”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종료후 “별지제2호서식”을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실 적 가 점”을 “실적가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거양하였을”을 “거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표격”을 “표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서명”을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2항 각호”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7조”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월 0. 05점, 최대 15개월(0.75점)
※ 재난안전 업무관련 팀 : 재해대책팀, 안전총괄팀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제4조 관련)

평정단위 기관명	부서별	5급 및 지도·연구관		6급이하 및 지도·연구직, 별정직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	행정복지 국장	부군수	과장	행정복지 국장
농산업건설국	농산업건설국	농산업건설국장	부군수	과장	농산업건설국장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부군수	부군수	과장	원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부군수	부군수	과장	소장
국(局)외부서	기획조정실	부군수	부군수	실장	부군수
	사업소	부군수	부군수	소장	부군수
	읍·면	부군수	부군수	읍·면장	부군수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조직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 평정자 및 확인자 : 조직개편사항 반영

- 평정대상에서 의회사무과 제외(의회사무과 별도 평정)
- 국 내 평정자(5급 등) 및 확인자(6급이하)에 국장 추가
-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6급 이하 확인자 변경(기존 : 부군수→원장/소장)

○ [별표5] 실적가점 기준 6. 특정업무 근무경력 :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기관 삭제

- 재난 및 안전업무 관련 팀 : 재난안전팀(삭제) → 안전총괄팀
- 특정업무(기피부서) 관련 부서 : 환경자원사업소(삭제)

○ 인용 법령의 상세 조항 수정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지 제15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2항 각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7조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22-425호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장수군립공공도서관 이전에 따른 소재지 정비와 도서관 운영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치 정비(안 제3조)

- 장계면 장계7길 15 → 장계면 방천길 19

나. 입관권 삭제

다. 이용시간 정비(안 제11조)

- 평일 09:00 ~ 21:00 → 09:00 ~ 22:00

라. 열람 및 대출 정비(안 제13조)

- 대출권수 5권, 대출기간 1회 1주일 연장 추가

- 대출방법 : 자료대출신청서 제출 → 회원가입 후 대출

마. 시설의 사용 및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신설(안 제19조 ~ 23조)

- 사용시설(다목적실), 사용료 기준, 사용신청서 및 사용허가서 서식, 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료 반환 신설

바. 열람실 지정 정비(안 제24조)

- 일반·남학생·여학생·아동 및 장애인 열람실 → 1층(일반자료실 1·어린이자료실), 2층(일반자료실 2)

사. 기증자료의 관리 정비(안 제26조)

-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 등록·관리하여 제공

아. 자료의 폐기 정비(안 제27조)

- 폐기 소정의 절차 → 폐기 및 제적 기준 추가

자. 독서문화 여건 조성 신설(안 제28조)

- 독서문화 및 도서관 사업 실시, 기념품 등 제공
-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 가능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전화 063-350-2331, 팩스 063-351-161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 강유림(전화 : 063-350-2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보 이용·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2.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
3. 공문서 등 행정자료·향토자료, 그 밖에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3조(위치) 도서관의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 19에 둔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정리 · 보존 · 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열람 · 대출
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① 도서관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운영할 때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이 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

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시간) 도서관 이용 시간을 평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12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시 휴관) 및 매주 월요일
2. 임시휴관 : 도서관 자료의 정리·점검 및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미리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④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주일 연장 가능하다.

⑤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⑥ 자료열람 및 대출 시간은 이용 시간 내로 한다.

제14조(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을 금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자료의 반환) 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한 후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퇴관 및 열람거절) 자료의 열람 및 이용자가 제25조 규정을 위배하거나, 근무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퇴관을 명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간 열람 또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8조(입관거절) 감염병환자·술에 취한 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사용) ① 사용시설은 도서관 2층의 다목적실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 목적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0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사용 신청자가 시설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에 입관하는 자,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 및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관료: 무료
2. 자료대출료: 무료
3. 복사수수료: 16절지는 1매당 20원, 8절지는 1매당 40원(다만, 도서관 자료에 한하며,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열람실 지정)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1. 1층: 일반자료실 1, 어린이 자료실
2. 2층: 일반자료실 2

② 사전·연감·연표·각종 색인목록 등 열람 횟수가 많은 참고도서는 지정된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25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것
2. 음주·잡담·복장불량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그 밖에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 ·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에 활용하거나 다른 도서관·관련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단, 불가항력의 재해 · 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 · 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폐기 ·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및 학술행사
2.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4.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5. 독서 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
6.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
7. 독서 관련 다양한 도서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
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④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수군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사용료 기준(제21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다 목 적 실	1회(2시간)	20,000	◦ 1회 기준시간(2시간)을 초과 시, 초과된 매 시간당 4천원을 가산한다.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19조관련)

사용자	주 소			
	직업또는단체명		연락전화번호	
	성명또는대표자		생년월일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용시설및부대시설				
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				
기 타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시설 사용허가서(제19조관련)

<table>
<tr><td rowspan="2">사용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사용시설및부대시설</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 용 목 적</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 용 기 간</td><td colspan="3">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2">기 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td></tr>
</table>

장수군 공고 제2022-445호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시화 함(안 제1조)

나. 「지역보건법」일부개정 사항(2021.08.17.)을 반영하여 인용된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 제4조, 안 제9조,〔별표〕, 별지 제4호서식)

* 관련 법규

구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보건법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18조	제23조
	동일(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21조	제29조
	과태료	제26조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 입법예고 : 2022. 4월중
-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 2022. 4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4월 중
- 의회 안건 제출 : 2022. 5월 중
- 공포 및 시행 : 2022. 5월 중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9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의 행위를 행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2.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 ---------- ---------- -------.
1.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 ---------- ---------- ----------
2.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법 제29조 ----------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9조(강제징수) 제7조제2항-- ----------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장수군 고시 제2022-5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목적** : 특용작물재배(오미자 및 사과나무)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장수읍 용계리 산3-28번지, 88-2번지
   - 면 적 : 1,799㎡

3. **사업비 필요금액** : 금72,880,000원

4. **사업 예정 기간** : 2022. 4월 ~ 2023. 2월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김 종 호

장수군 공고 제2022-414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장 수 군 수

○ **지정일자** : 2022년 4월 1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합 계					
장수읍 송천리 1037-4	29.00m	4.00m	115.00㎡	손광웅	

장수군 공고 제2022-424호

수척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척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장 수 군 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수척 소하천	수척소하천 정비공사	번암면 대론리 1143-9 번지	번암면 대론리 493 번지	0.765km	0.765km		2021.05.	2023.10.	재해 예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수척소하천 정비공사 세부시행계획

1. 하천공사의 명칭 : 수척소하천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천 주변의 농경지 및 주택 등을 자연재해 및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사업량 : 소하천정비 L=0.765km

◦ 사업비 : 2,860백만원(폐기물처리비, 보상비 등 포함)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붙임1참조)

◦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수척마을 지내(대론리 1143-9 ~ 대론리 493번지)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장수군수 (안전재난과장)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 2021. 05 ~ 2023. 10.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물건) 조서 : 붙임2참조

7. 준공된 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장수군수 (안전재난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장수군 안전재난과 하천팀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0일로 한다.

공사예정 공정표

■ 공 사 명 : 수척소하천 정비공사

■ 공사기간 : 30개월(900일)

공종 \ 기간	보할(%)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16월	18월	20월	22월	24월	26월	28월	30월	비고
측 재 공	15.9%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호 안 공	22.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배 수 공	5.6%				0.9%	0.9%	0.9%				0.9%	0.9%	0.9%				
구조물공	5.4%				0.9%	0.9%	0.9%				0.9%	0.9%	0.9%				
교 량 공	28.5%					7.1%	7.1%					7.1%	7.1%				
포 장 공	2.1%							0.5%	0.5%					0.5%	0.5%		
가 도 공	2.4%					0.6%	0.6%					0.6%	0.6%				
부 대 공	17.3%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계	100.0%	1.2%	4.1%	4.1%	6.0%	13.7%	13.7%	4.7%	4.7%	4.1%	6.0%	13.7%	13.7%	4.7%	4.7%	1.2%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2,860	300	1,300	1,000	260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21. 5월 ~ 보상 완료시까지

◦ 보상절차 및 방법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다. 기타사항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 (☎ 063-350-2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위 치 도

수 척 소 하 천 정 비 사 업

편입용지 및 지장물조서

2022. 04.

장 수 군

수척소하천 토지조서

소 재 지 : 전북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일원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성 명	주 소	
1	장수	번암	대론	1143-15	제	966.0	118.0	국	건설부	
2	장수	번암	대론	1143-16	천	1002.0	0.0	국	국토교통부	
3	장수	번암	대론	971-2	천	34.0	34.0	국	국토교통부	
4	장수	번암	대론	971	천	479.0	17.0	군	장수군	
5	장수	번암	대론	1143-1	천	312994.0	1024.0	국	국토교통부	
6	장수	번암	대론	974-1	도	2831.0	0.0	국	국토해양부	
7	장수	번암	대론	892-4	전	35.0	35.0	국	국토교통부	
8	장수	번암	대론	892-3	제	18.0	18.0	국	건설부	
9	장수	번암	대론	1143-13	제	62.0	62.0	국	건설부	
10	장수	번암	대론	1277	답	4419.1	129.9	군	장수군	
11	장수	번암	대론	1368	구	259.0	2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장수	번암	대론	967-2	천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3	장수	번암	대론	967-1	제	46.0	46.0	국	건설부	
14	장수	번암	대론	966-2	제	22.0	22.0	국	건설부	
15	장수	번암	대론	1143-12	제	118.0	118.0	국	건설부	
16	장수	번암	대론	1276	답	2865.1	119.3	김정•외2인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121, 101동 ****호(내동,연지마을대우아파트)	
17	장수	번암	대론	1275	답	1873.4	72.3	김정•외2인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121, 101동 ****호(내동,연지마을대우아파트)	
18	장수	번암	대론	965-1	제	11.0	11.0	국	건설부	
19	장수	번암	대론	965-2	제	3.0	3.0	국	건설부	
20	장수	번암	대론	1274	답	388.7	11.8	박종•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산***	
21	장수	번암	대론	965-1	제	20.0	20.0	국	건설부	
22	장수	번암	대론	1273	답	2107.4	118.0	박종•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산***	
23	장수	번암	대론	1370	도	2303.0	1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장수	번암	대론	1369	구	772.4	1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장수	번암	대론	909	천	259.0	134.0	국	건설교통부	
26	장수	번암	대론	909-4	전	557.0	74.0	이상•	장수군 번암면 원대론길 ***	
27	장수	번암	대론	909-2	전	146.0	24.0	이상•	장수군 번암면 원대론길 ***	
28	장수	번암	대론	909-1	전	16.0	0.0	국	기획재정부	
29	장수	번암	대론	1169	도	7285.0	439.0	국	국토해양부	

수척소하천 토지조서

소 재 지 : 전북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일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주소	
30	장수	번암	대론	910-3	임	1787.0	48.0	인형*	장수군 번암면 대대론길 ***	
31	장수	번암	대론	1143-16	제	350.0	297.0	국	건설부	
32	장수	번암	대론	972-3	천	118.0	15.0	국	국토교통부	
33	장수	번암	대론	878	천	175.0	20.0	군	장수군	
34	장수	번암	대론	1143-15	천	22.0	22.0	국	국토교통부	
35	장수	번암	대론	879	공	139.0	20.0	군	장수군	
36	장수	번암	대론	881-2	제	12.0	12.0	국	건설부	
37	장수	번암	대론	881	잡	48.0	48.0	군	장수군	
38	장수	번암	대론	785-4	도	21824.0	612.0	국	국토해양부	
39	장수	번암	대론	785-6	도	2402.0	51.0	국	국토해양부	
40	장수	번암	대론	898-2	제	3.0	3.0	국	건설부	
41	장수	번암	대론	901-2	제	4.0	4.0	국	건설부	
42	장수	번암	대론	902-1	제	5.0	5.0	국	건설부	
43	장수	번암	대론	903-1	제	2.0	2.0	국	건설부	
44	장수	번암	대론	1143-14	제	88.0	88.0	국	건설부	
45	장수	번암	대론	905-1	제	46.0	46.0	국	건설부	
46	장수	번암	대론	906-1	제	93.0	93.0	국	건설부	
47	장수	번암	대론	908-2	천	33.0	33.0	국	국토교통부	
48	장수	번암	대론	1272	답	3987.8	77.5	군	장수군	
49	장수	번암	대론	1143-11	제	38.0	38.0	국	건설부	
50	장수	번암	대론	1368	도	1369.7	157.0	국	농림축산식품부	
51	장수	번암	대론	1385	구	392.2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52	장수	번암	대론	840	밭	529.0	75.0	오경*	장수군 장수읍 황교길 ***	
53	장수	번암	대론	839	대	264.0	9.0	오경*	장수군 장수읍 황교길 ***	
54	장수	번암	대론	1167-2	도	8.0	6.0	국	국토해양부	
55	장수	번암	대론	836	잡	722.0	50.0	오경*	장수군 장수읍 황교길 ***	
56	장수	번암	대론	910-17	도	299.0	3.0	국	국세청	
57	장수	번암	대론	910-10	도	10.0	10.0	국	국토해양부	
58	장수	번암	대론	912-2	도	33.0	33.0	박태*	남원군 동지면 월낙리 **	
60	장수	번암	대론	912-1	천	99.0	99.0	군	장수군	

수척소하천 토지조서

소 재 지 : 전북 장수군 번암면 대튼리 일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주소	
60	장수	번암	대튼	910-6	도	519.0	172.0	국	국토해양부	
61	장수	번암	대튼	537	전	1154.0	46.0	군	장수군	
62	장수	번암	대튼	1143-10	전	20742.0	5569.0	국	국토관리부	
63	장수	번암	대튼	493	답	85.0	85.0	군	장수군	
64	장수	번암	대튼	835-1	도	207.0	21.0	국	국토해양부	
65	장수	번암	대튼	834-1	대	187.0	17.0	군	장수군	
66	장수	번암	대튼	492-2	답	1369.0	39.0	군	장수군	
계						401034.6	11433.6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장물소재지 주소	편입물건명	편입량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492-2	수도, 화단, 자연석(문주포함)	1식	장수군 번암면 수척1길 **	김경*	
2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492-2	수목	10주	장수군 번암면 수척1길 **	김경*	
3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537	담장(휀스 대문포함)	40m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105동 ****호(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예가)	장일*	
4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537	평상(철골경량)	1식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105동 ****호(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예가)	장일*	
5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537	수목	37주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105동 ****호(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예가)	장일*	
6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39-2외2근	대문, 건사, 토비사, 태양광시설	1식	장수군 번암면 수척2길 **	김종*	
7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39-2외2근	수목	27주	장수군 번암면 수척2길 **	김종*	
8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40-3외2근	비닐하우스	280㎡	장수군 번암면 수척2길 **	김종*	
9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40-3외2근	수목	2주	장수군 번암면 수척2길 **	김종*	
10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829-3외2근	비닐하우스	120㎡	장수군 번암면 수척2길 **	김종*	
11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829-3외2근	수목	2주	장수군 번암면 수척2길 **	김종*	
12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829-3외2근	도라지	10㎡	장수군 번암면 수척2길 **	김종*	
13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40-1외2근	관정	1식	장수군 번암면 수척2길 **	김종*	
14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40-1외2근	도라지	25㎡	장수군 번암면 수척2길 **	김종*	
15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40-1외2근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스레트	227㎡	장수군 번암면 수척1길 **	김영*	
16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40-1외2근	수목	4주	장수군 번암면 수척1길 **	김영*	
17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27외2근)	수목	3주	장수군 번암면 수척1길 **	김영*	
18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10(527외2근)	두릅나무	40㎡	장수군 번암면 수척1길 **	김영*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명	편입량	소유자		비고
	주소			주소	성명	
19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912-1	수목	2주	장수군 번암면 수확1길 **	김복*	
20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834-1	수목	4주	전주시 덕진구 영주3길 15, ***호(인후동2가)	김용*	
21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910-13	수목	1주	수확미묘		
22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910-3	관정	1식	장수군 번암면 원대론길 ***	이삼*	
23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910-3	수목	15주	장수군 번암면 원대론길 ***	이삼*	
24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878, 879	수목	155주	장수군 번암면 수확1길 *	유옥*	
25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834-6	수목	30㎡	장수군 번암면 ***	윤태*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